

「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」신청서

※신청서 제출 기한 1일 이전, 보고서 제출 기한 7일 이내

		담임	학년부장	교감
				전결
성명			학년 반 번	휴대폰
본교 출석인정기간 연간 20일	신청 기간	20 년 월 일 ~ 월 일()일간		
	우리 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 및 불허 기간 확인 ※ 담임교사와의 사전 협의 또는 문의			(○, ×)
학습형태	가정학습			
장 소	자택 (경기도 00시 ~~)			
보호자명		관계	휴대폰	
목 적				
교외체험학습 (가정학습) 계획	교시	교과	※ 학습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. (본 양식은 1일 예시이며, 2일 이상일 경우 양식 변경 가능)	
	1			
	2			
	3			
	4			
	5			
	6			
학생안전	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(담당)교사와 직접 통화하겠습니다.			☐ 동의함
위와 같이 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」을 신청합니다. 20 년 월 일 수지초등학교장 귀하				

----- (이하 담임 작성) -----

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통보서

성명			학년 반	제 학년 반 번
본교 출석 인정 기간 연간 20일	신청 기간	20 년 월 일 ~ 월 일()일간		
	허가 기간	20 년 월 일 ~ 월 일()일간		
금회까지 누적 사용 기간 ()일	위와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 20 . . . 수지초등학교 ()학년 ()반 담임교사: (인) 보호자님 귀하			

- ※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**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(또는 문자)**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.
- ※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/심각 단계시 **대한민국 내에 거주**하고 있는 본교 재학생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, **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습니다.**
- ※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(담당)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(사고)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(담당)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.
- ※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(담당)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건강과 안전을 확인시켜야 합니다. 미이행의 경우 시·군·구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」 결과 보고서			담임	학년부장	교감
					전결

성명			학년 반	제 학년 반 번	
가정학습 기간			20 년 월 일 ~ 월 일 () 일간		
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장소					
학습형태	가정학습				
제 목					
교외체험학 습 (가정학습) 결과	교시	교과	※ 학습계획서에 따라 학생이 공부한 학습결과물, 작품 등을 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. (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양식 변경 가능)		
	1				
	2				
	3				
	4				
	5				
	6				
위와 같이 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」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 20 년 월 일 보호자: (인) 학생: (인) 수지초등학교장 귀하					

※ 학습결과보고서는 서면 제출 또는 담임선생님 메일로 발송해야 합니다.

※ 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양식 변경 가능